

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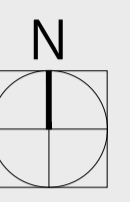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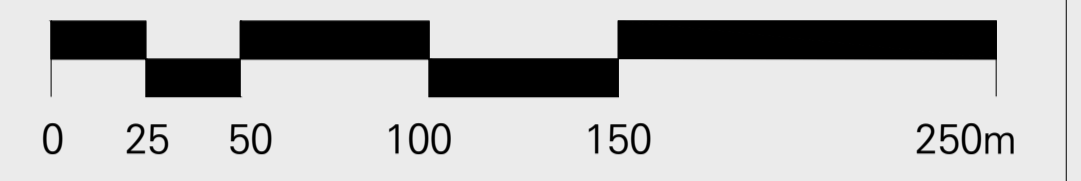
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	74
②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도	75
③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	76
④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	78

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
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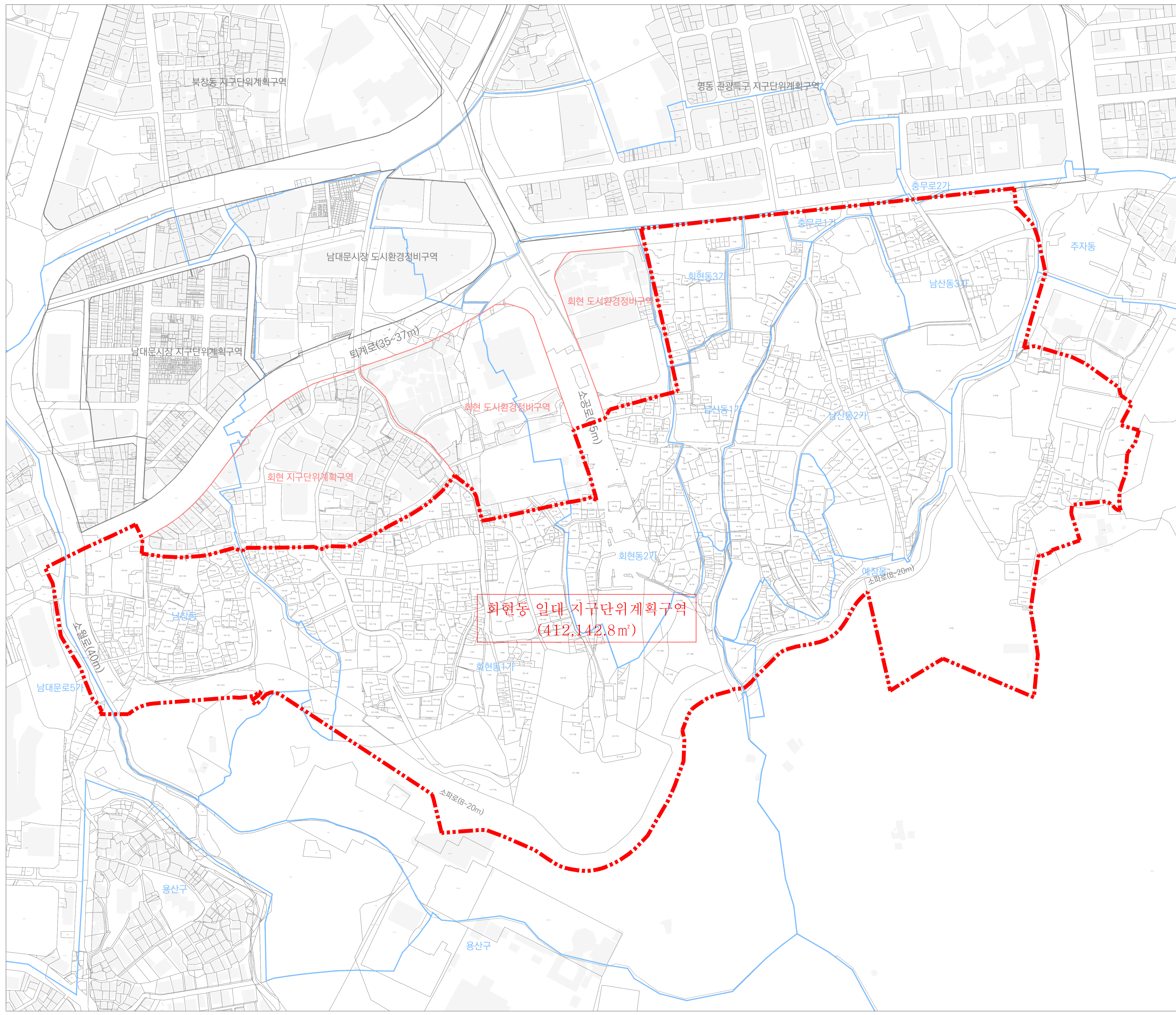
scale 1:2,000



-범례-

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

지적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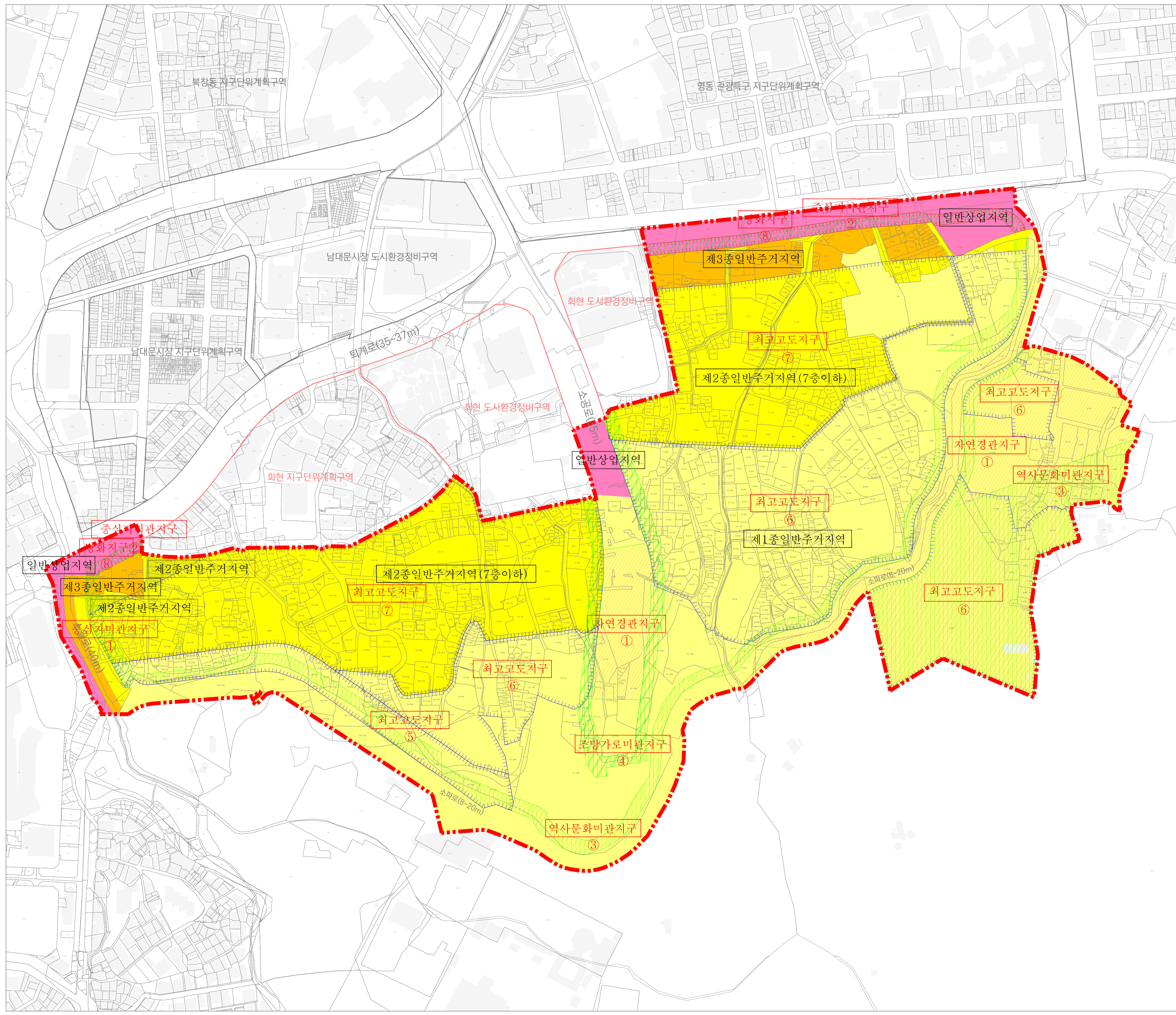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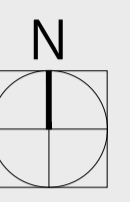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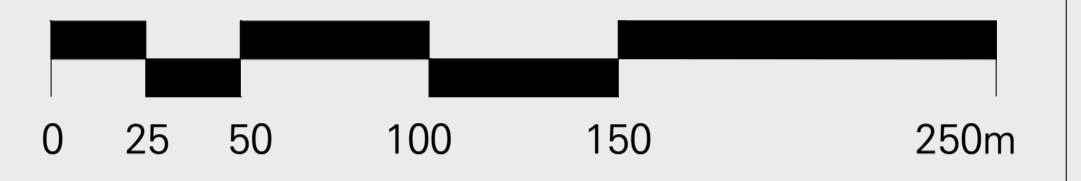


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
(412,142.8m²)

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

용도지역 · 지구 결정도

scale 1:2,00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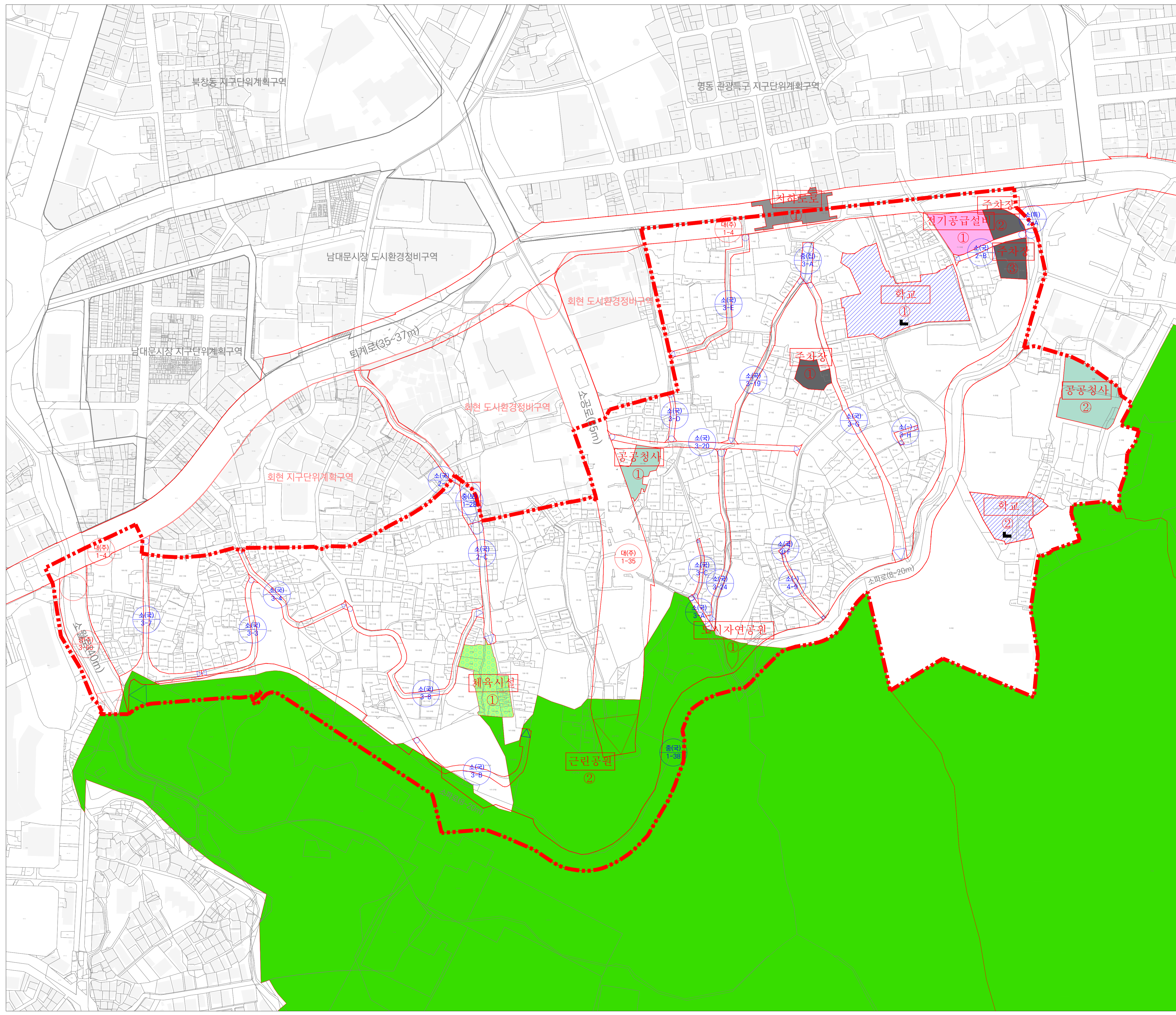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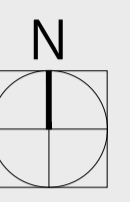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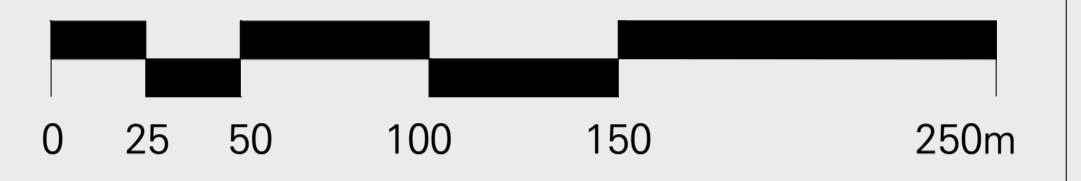
-범례-

-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
- 지적선
- 제1종일반주거지역
- 제2종일반주거지역
-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 이하)
- 제3종일반주거지역
- 일반상업지역
- 자연경관지구
- 중심지미관지구
- 역사문화미관지구
- 조망가로미관지구
- 최고고도지구
- 방화지구

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

도시기반시설(기정) 결정도

scale 1:2,00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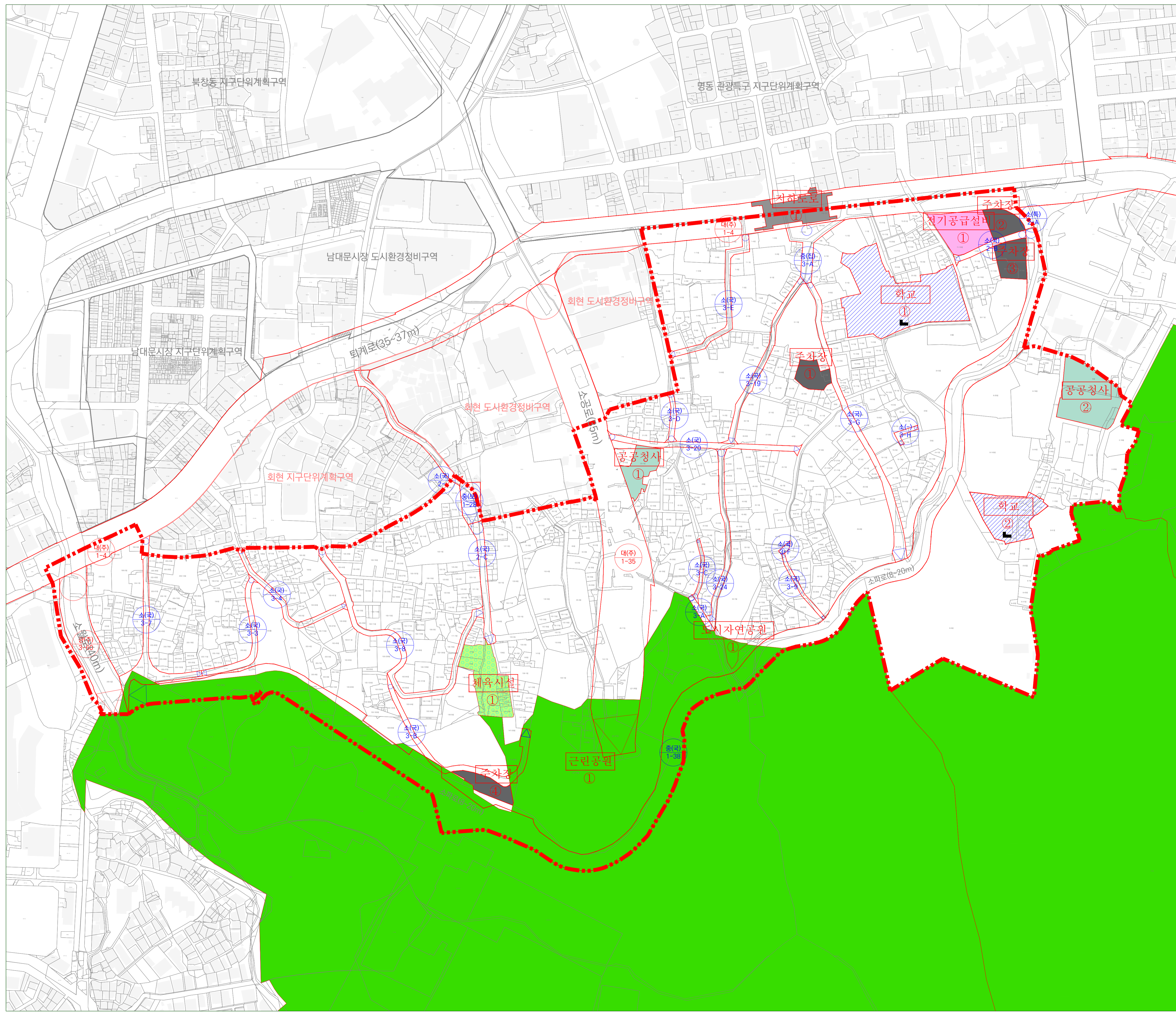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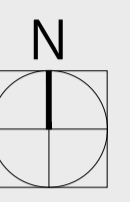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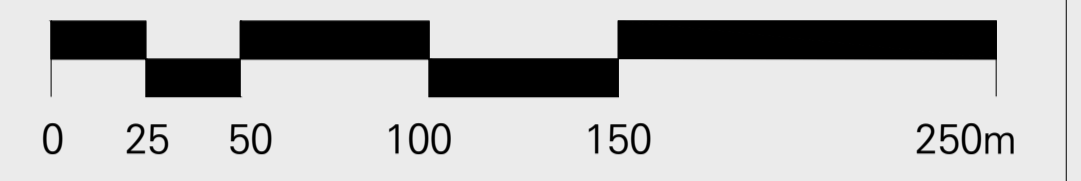
-범례-

-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
- 지적선
- 대로
- 중로이하
- 주차장
- 지하도로
- 공원
- 전기공급설비
- 공공청사
- 학교
- 체육시설

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

도시기반시설(변경) 결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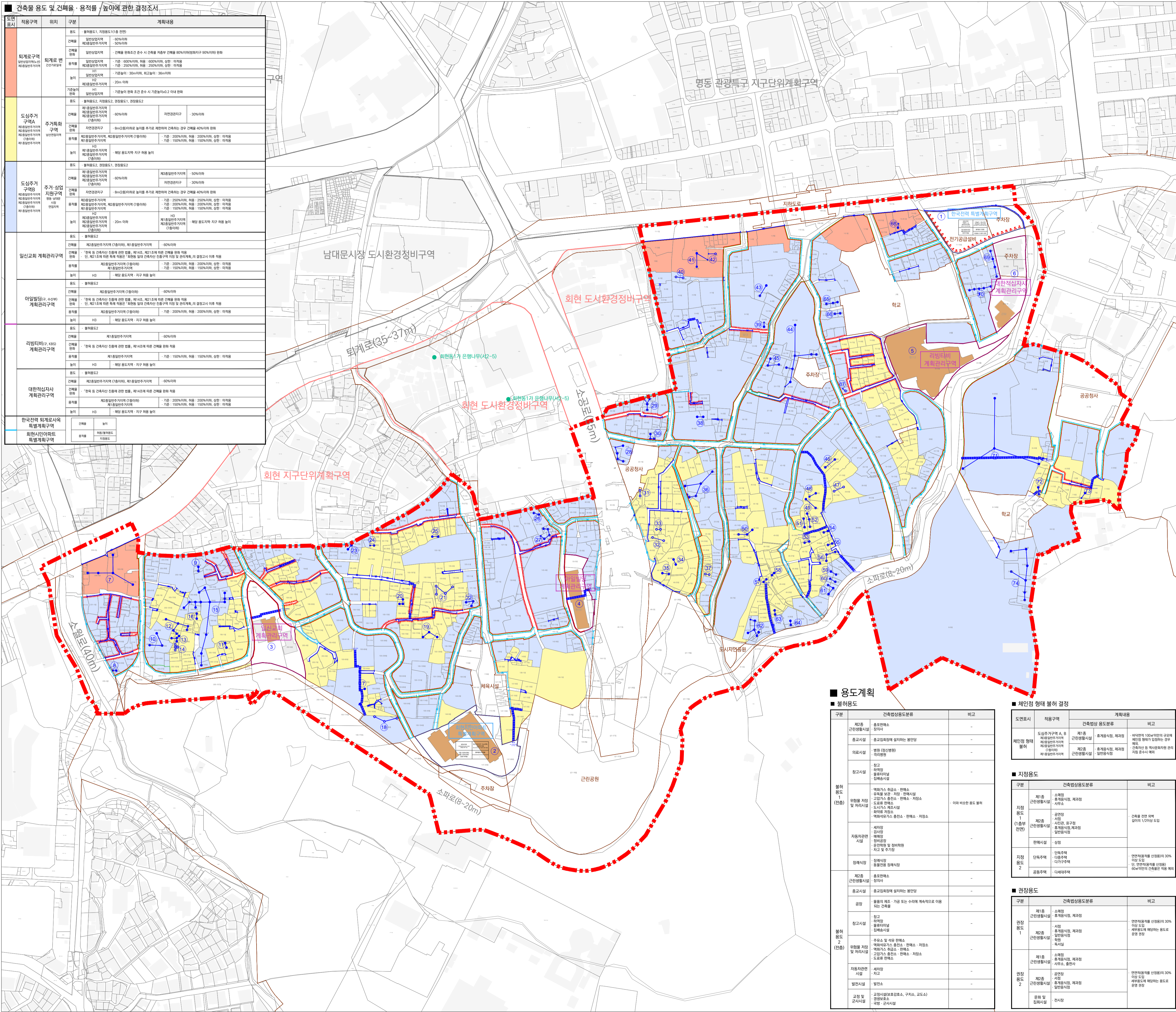
scale 1:2,000



-범례-

-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
- 지적선
- 대로
- 중로이하
- 주차장
- 지하도로
- 공원
- 전기공급설비
- 공공청사
- 학교
- 체육시설

도면 표시	작성구역	위치	구분	계획내용
퇴계로구역 퇴계로변 퇴계로변지구	퇴계로변 퇴계로변지구	퇴계로변	도심	복합용도 1, 지용률 41% 이하
			건축물	일반상업지구 1 60%이하 복합용도지구 1 50%이하
			건축물	일반상업지구 1 - 건축물 용적률(중수시 건축물 제외) 80%이하(일반지구 90%이하) 용회
			용회	일반상업지구 1 - 기준: 100%이하, 층고: 100%이하, 상한: 4각형 복합용도지구 1 - 기준: 25%이하, 층고: 25%이하, 상한: 4각형
도심주거 주거특화 구역	주거특화 구역	주거특화	도심	복합용도 2, 지용률 50%, 환경용도 2
			건축물	복합용도지구 1 60%이하 복합용도지구 1 60%이하
			건축물	복합용도지구 1 - 기준: 100%이하, 층고: 100%이하, 상한: 4각형 주거특화지구 1 - 기준: 25%이하, 층고: 25%이하, 상한: 4각형
			용회	복합용도지구 1 - 기준: 200%이하, 층고: 200%이하, 상한: 4각형 주거특화지구 1 - 기준: 150%이하, 층고: 150%이하, 상한: 4각형
도심주거 주거·상업 지역	주거·상업 지역	주거·상업	도심	복합용도 2, 지용률 50%, 환경용도 2
			건축물	복합용도지구 1 60%이하 복합용도지구 1 60%이하
			건축물	복합용도지구 1 - 기준: 100%이하, 층고: 100%이하, 상한: 4각형 주거·상업지역 1 - 기준: 25%이하, 층고: 25%이하, 상한: 4각형
			용회	복합용도지구 1 - 기준: 200%이하, 층고: 200%이하, 상한: 4각형 주거·상업지역 1 - 기준: 150%이하, 층고: 150%이하, 상한: 4각형
앞산교회 계획관리구역	앞산교회 계획관리구역	앞산교회	도심	복합용도 2
			건축물	복합용도지구 1 (주용회) - 60%이하 복합용도지구 1 (주용회) - 60%이하
			건축물	「건축 등 건축자산 인센티브 지원 특별법,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용회 제한 단, 제12조에 의해 특별 적용은 「회현동 일대 건축자산 인센티브 지원 및 관리계획」의 결정요시 이후 적용
			용회	복합용도지구 1 (주용회) - 기준: 200%이하, 층고: 200%이하, 상한: 4각형 복합용도지구 1 (주용회) - 기준: 150%이하, 층고: 150%이하, 상한: 4각형
이일빌딩(구, 수선역) 계획관리구역	이일빌딩(구, 수선역) 계획관리구역	이일빌딩(구, 수선역)	도심	복합용도 2
			건축물	복합용도지구 1 (주용회) - 60%이하 복합용도지구 1 (주용회) - 60%이하
			건축물	「건축 등 건축자산 인센티브 지원 특별법,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용회 제한 단, 제12조에 의해 특별 적용은 「회현동 일대 건축자산 인센티브 지원 및 관리계획」의 결정요시 이후 적용
			용회	복합용도지구 1 (주용회) - 기준: 200%이하, 층고: 200%이하, 상한: 4각형 복합용도지구 1 (주용회) - 기준: 150%이하, 층고: 150%이하, 상한: 4각형
리얼티비(구, KBS) 계획관리구역	리얼티비(구, KBS) 계획관리구역	리얼티비(구, KBS)	도심	복합용도 2
			건축물	복합용도지구 1 (주용회) - 60%이하 복합용도지구 1 (주용회) - 60%이하
			건축물	「건축 등 건축자산 인센티브 지원 특별법,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용회 제한 단, 제12조에 의해 특별 적용은 「회현동 일대 건축자산 인센티브 지원 및 관리계획」의 결정요시 이후 적용
			용회	복합용도지구 1 (주용회) - 기준: 200%이하, 층고: 200%이하, 상한: 4각형 복합용도지구 1 (주용회) - 기준: 150%이하, 층고: 150%이하, 상한: 4각형
대한적십자사 계획관리구역	대한적십자사 계획관리구역	대한적십자사	도심	복합용도 2
			건축물	복합용도지구 1 (주용회) - 60%이하 복합용도지구 1 (주용회) - 60%이하
			건축물	「건축 등 건축자산 인센티브 지원 특별법,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용회 제한 단, 제12조에 의해 특별 적용은 「회현동 일대 건축자산 인센티브 지원 및 관리계획」의 결정요시 이후 적용
			용회	복합용도지구 1 (주용회) - 기준: 200%이하, 층고: 200%이하, 상한: 4각형 복합용도지구 1 (주용회) - 기준: 150%이하, 층고: 150%이하, 상한: 4각형
한국전력 퇴계로사옥 특별계획구역	한국전력 퇴계로사옥 특별계획구역	한국전력 퇴계로사옥	도심	복합용도 2
회현시안아파트 특별계획구역	회현시안아파트 특별계획구역	회현시안아파트	도심	복합용도 2



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
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

scale 1:2,000



-범례-

-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
 - 지적선
 - 도시계획시설
 - 특별계획구역
 - 계획관리구역
 - 도심주거구역 A
 - 도심주거구역 B
 - 퇴계로구역
 - 공동개발 (지정)
 - 공동개발 (권장)
 - 획지
 - 건축한계선
 - 전면공지
 - 골목지정선
 - 벽면한계선
 - 공공보행통로
 - 보호수목
 - 차량출입불허구간
 - 제한차량출입불허구간
 - 근현대건축물
- * 자세한 사항은 별도 도장 참조

■ 용도계획

구분	건축법상용도분류	비고
■ 불허용도	제2종 준주거지역	용회면적
	준주거지역	용회면적
	종교시설	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용회
	의료시설	병동 (방선방한) 격리방한
■ 불허 용도 1 (권장)	창고	상업용 창고
	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	위험물 저장 시설, 위험물 처리 시설
	자동차관련 시설	자동차 관련 시설
	장래시설	장래시설
■ 불허 용도 2 (권장)	제1종 근린생활시설	용회면적
	종교시설	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용회
	종교시설	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용회
	공정	공정
■ 불허 용도 1 (권장)	창고	상업용 창고
	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	위험물 저장 시설, 위험물 처리 시설
	자동차관련 시설	자동차 관련 시설
	장래시설	장래시설
■ 불허 용도 2 (권장)	제1종 근린생활시설	용회면적
	종교시설	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용회
	종교시설	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용회
	공정	공정

도면표시	작성구역	건축법상 용도분류	계획내용	비고
세입자 할여	도심주거구역 A, B 복합용도지구 1 복합용도지구 1 복합용도지구 1	제1종 근린생활시설	주택용시설, 제과점	비서면 100㎡이하의 규모에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외
		제2종 근린생활시설	주택용시설, 제과점, 일반상업	건축자산 용 회계상처분 관리 차등 조치가 해당
지정용도 1 (권장)	제1종 근린생활시설	제1종 근린생활시설	주택용시설, 제과점, 편의점, 꽃구경, 주택용시설, 제과점, 일반상업	건축물 면적 200㎡ 이하에 1/2이상 도당
		제2종 근린생활시설	주택용시설, 제과점, 일반상업	
지정용도 2	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공동주택	단독주택	주택용시설	연면적용회를 산정하여 30% 이상 도당
		다세대주택	주택용시설, 제과점, 일반상업	연면적용회를 산정하여 30% 이상 도당, 1인당(용회용 산정용) 60㎡이하 건축용회 면적 제한

구분	인원 및 결정권자		
	작성자	1차 확인자	1차 확인자
소속	공공재생과	공공재생과	공공재생과
직위	서울역재생사업팀 담당	서울역재생사업팀장	공공재생과장
직명	시설7급	시설5급	시설4급
성명	이석규	박일형	이동일
확인인			